

훌륭한 서비스.

사업주
권리장전

우수한 도시.



뉴욕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뉴욕시의 신념의 일환으로, 시장실과 뉴욕시의회는 사업주 권리장전(Business Owner's Bill of Rights)을 제정하였습니다.
뉴욕시의 사업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.

- 여러분의 사업체가 뉴욕시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보, 도구, 자원 및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
 -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정보를 이용할 권리
 - 시 정책, 규정 및 집행 결정에 소상공인의 관점을 반영할 권리
 - 사업주들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시 산하 기관으로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
 - 규칙 및 요건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받을 권리
 - 모든 시 산하 기관으로부터 공정하고 일관되며 조직된 점검 및 법규 집행을 받을 권리
 - 명확한 신분증을 소지한, 전문 지식을 갖춘 뉴욕시 공무원이 존중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우해 줄 권리
 - 가능한 한 제재가 부과되기 전에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교육을 받을 권리
 - 위반 사항, 시정 조치 및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을 권리
 - 조사 및 그에 따른 행정 심문과 재판(재판 전 협의 기일 및 합의 협상 포함)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
-
- 시 정부와의 경험에 대해 보복에 대한 우려없이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권리

권리장전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, “연락하기(Contact Us)”를 선택하여 뉴욕시의 의견 제출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용자 설문조사 (nyc.gov/customerurvey)를 통해 제출된 정보는 사업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산하기관들 간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.